

#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입주자모집공고(정정)



■ 2026년 03월 27일 공고된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입주자모집공고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페이지	변경 전				페이지	변경 후			
	약식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약식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6P	59A2	105동 7~8호	1F	3	7P	59A2	105동 7~8호/ 113동 1~4호	1F	3
			2F	6				2F	6
			3F	6				3F	6
			4~5F	11				4~5F	11
			6~10F	29				6~10F	29
			11~20F	35				11~20F	35
			21~22F	3				21~22F	3
7P	84A	101동 1,2,4호/ 102,103, 107동 1,3호/ 104동 3,4호/ 109,112동 1,3,4호	1F	8	8P	84A	101동 1,2,4호/ 102,103, 107,110동 1,3호/ 104동 3,4호/ 109,112동 1,3,4호	1F	8
			2F	18				2F	18
			3F	19				3F	19
			4~5F	36				4~5F	36
			6~10F	84				6~10F	84
			11~20F	103				11~20F	103
			21~30F	73				21~30F	73
	31~35F	23	31~35F	23					
	84B	101동 3호/ 102,103, 107,109, 112동 2호	1F	6	84B	101동 3호/ 102,103, 107,110, 112동 2호/ 109동 2,5호	1F	6	
			2F	8			2F	8	
			3F	8			3F	8	
			4~5F	15			4~5F	15	
			6~10F	40			6~10F	40	
			11~20F	78			11~20F	78	
21~30F			68	21~30F			68		
31~36F	20	31~36F	2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3.27.(금)	26.04.06.(월)	26.04.07.(화)	26.04.08.(수)	26.04.14.(화)	26.04.16.(목)~ 26.04.22.(수)	26.04.27.(월)~ 26.04.29.(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ulche-eg.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 1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4.06.(월)	26.04.07.(화)	26.04.08.(수)	26.04.14.(화)	26.04.16.(목)~ 26.04.22.(수)	26.04.27.(월)~ 26.04.29.(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4-15)</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6.04.14**)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과 - 12328호(2026.03.25.) 및 12638호(2026.03.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4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6층 13개동 총 1,670세대 중 일반분양 1,061세대 (조합 492세대, 임대 100세대 및 보류지 17세대 제외) [특별공급 576세대(기관추천 104세대, 다자녀가구 106세대, 신혼부부 240세대, 노부모부양 31세대, 생애최초 9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74	01	059.0000A	59A1	59.9800	21.8451	81.8251	53.1072	134.9323	31.1189	206	29	29	69	9	27	163	136	12
			59A2	59.9846	21.3412	81.3258	53.1112	134.4370	31.1213	93								6
	02	059.9847B	59B	59.9847	21.8111	81.7958	53.1113	134.9071	31.1213	27	3	3	6	1	2	15	12	1
	03	074.9802A	74A	74.9802	25.9359	100.9161	66.3886	167.3047	38.9013	6	1	1	1	-	-	3	3	1
	04	074.9891B	74B	74.9891	27.1747	102.1638	66.3965	168.5603	38.9059	22	2	2	5	1	2	12	10	1
	05	084.9869A	84A	84.9869	29.5528	114.5397	75.2487	189.7884	44.0930	381	38	38	88	11	35	210	171	19
	06	084.9808B	84B	84.9808	30.0203	115.0011	75.2433	190.2444	44.0898	271	27	27	63	8	26	151	120	9
	07	084.9896C	84C	84.9896	30.4749	115.4645	75.2511	190.7156	44.0944	36	4	4	8	1	3	20	16	2
	08	101.2177B	101B	101.2177	36.2344	137.4521	89.6197	227.0718	52.5139	17	-	2	-	-	-	2	15	3
	09	133.3409	133P	133.3409	49.8969	183.2378	118.0622	301.3000	69.1801	1	-	-	-	-	-	0	1	-
10	155.2873	155P	155.2873	58.9138	214.2011	137.4938	351.6949	80.5663	1	-	-	-	-	-	0	1	-	
합 계										1,061	104	106	240	31	95	576	485	54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2026-05-26	2026-12-10	2027-06-10	2027-11-10	2028-05-10	2028-11-10	2029-05-10		입주지정일
59A1	106,111동 1~4호/ 108동 3~5호	1F	6	129,965,640	320,834,360	-	450,800,000	10,000,000	12,54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157,780,000
		2F	11	134,145,990	331,154,010	-	465,300,000	10,000,000	13,265,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46,530,000	162,855,000
		3F	11	138,384,000	341,616,000	-	480,000,000	10,000,000	1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4~5F	22	141,180,510	348,519,490	-	489,700,000	10,000,000	14,485,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171,395,000
		6~10F	54	143,169,780	353,430,220	-	496,600,000	10,000,000	14,83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173,810,000
		11~20F	47	143,631,060	354,568,940	-	498,200,000	10,000,000	14,91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174,370,000
		21~29F	40	144,005,850	355,494,150	-	499,500,000	10,000,000	14,975,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174,825,000
	108동 1호	2F	1	131,320,650	324,179,350	-	455,500,000	10,000,000	12,775,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159,425,000
		3F	1	135,587,490	334,712,510	-	470,300,000	10,000,000	13,515,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164,605,000
		4~5F	2	138,384,000	341,616,000	-	480,000,000	10,000,000	1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6~10F	4	143,169,780	353,430,220	-	496,600,000	10,000,000	14,83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49,660,000	173,810,000
		11~20F	3	143,631,060	354,568,940	-	498,200,000	10,000,000	14,91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174,370,000
21~26F	4	144,005,850	355,494,150	-	499,500,000	10,000,000	14,975,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174,825,000		
59A2	105동 7~8호/ 113동 1~4호	1F	3	130,080,960	321,119,040	-	451,200,000	10,000,000	12,56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157,920,000
		2F	6	134,203,650	331,296,350	-	465,500,000	10,000,000	13,275,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162,925,000
		3F	6	138,441,660	341,758,340	-	480,200,000	10,000,000	14,01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168,070,000
		4~5F	11	141,209,340	348,590,660	-	489,800,000	10,000,000	14,49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171,430,000
		6~10F	29	143,198,610	353,501,390	-	496,700,000	10,000,000	14,835,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173,845,000
		11~20F	35	143,659,890	354,640,110	-	498,300,000	10,000,000	14,915,000	49,830,000	49,830,000	49,830,000	49,830,000	49,830,000	49,830,000	49,830,000	174,405,000
21~22F	3	144,005,850	355,494,150	-	499,500,000	10,000,000	14,975,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174,825,000		
59B	108동 2호	1F	1	123,334,740	304,465,260	-	427,800,000	10,000,000	11,39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149,730,000
		2F	1	127,515,090	314,784,910	-	442,300,000	10,000,000	12,115,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154,805,000
		3F	1	131,753,100	325,246,900	-	457,000,000	10,000,000	12,85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59,950,000
		4~5F	2	134,549,610	332,150,390	-	466,700,000	10,000,000	13,335,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163,345,000
		6~10F	5	139,335,390	343,964,610	-	483,300,000	10,000,000	14,165,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48,330,000	169,155,000
		11~20F	9	139,796,670	345,103,330	-	484,900,000	10,000,000	14,245,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169,715,000
		21~29F	8	140,171,460	346,028,540	-	486,200,000	10,000,000	14,31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170,170,000
74A	107동 4호	2F	1	165,945,480	409,654,520	-	575,600,000	10,000,000	18,78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201,460,000
		3F	1	171,192,540	422,607,460	-	593,800,000	10,000,000	19,69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207,830,000
		4~5F	2	174,652,140	431,147,860	-	605,800,000	10,000,000	20,29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212,030,000
		8F	1	177,102,690	437,197,310	-	614,300,000	10,000,000	20,715,000	61,430,000	61,430,000	61,430,000	61,430,000	61,430,000	61,430,000	61,430,000	215,005,000
		17F	1	177,679,290	438,620,710	-	616,300,000	10,000,000	20,815,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215,705,000

약식 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2026-05-26	2026-12-10	2027-06-10	2027-11-10	2028-05-10	2028-11-10	2029-05-10	
74B	107동 5호	1F	1	153,346,770	378,553,230	-	531,900,000	10,000,000	16,595,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186,165,000
		2F	1	158,536,170	391,363,830	-	549,900,000	10,000,000	17,495,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192,465,000
		3F	1	163,840,890	404,459,110	-	568,300,000	10,000,000	18,415,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198,905,000
		4~5F	2	167,329,320	413,070,680	-	580,400,000	10,000,000	19,020,000	58,040,000	58,040,000	58,040,000	58,040,000	58,040,000	58,040,000	203,140,000
		6~10F	5	169,837,530	419,262,470	-	589,100,000	10,000,000	19,455,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206,185,000
		11~20F	9	170,414,130	420,685,870	-	591,100,000	10,000,000	19,555,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206,885,000
		21~23F	3	170,846,580	421,753,420	-	592,600,000	10,000,000	19,630,000	59,260,000	59,260,000	59,260,000	59,260,000	59,260,000	59,260,000	207,410,000
84A	101동 1,2,4호/ 102,103, 107,110동 1,3호/ 104동 3,4호/ 109,112동 1,3,4호	1F	8	179,582,070	443,317,930	-	622,900,000	10,000,000	21,145,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218,015,000
		2F	18	185,405,730	457,694,270	-	643,100,000	10,000,000	22,155,000	64,310,000	64,310,000	64,310,000	64,310,000	64,310,000	64,310,000	225,085,000
		3F	19	191,373,540	472,426,460	-	663,800,000	10,000,000	23,19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232,330,000
		4~5F	36	195,294,420	482,105,580	-	677,400,000	10,000,000	23,87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237,090,000
		6~10F	84	198,090,930	489,009,070	-	687,100,000	10,000,000	24,355,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240,485,000
		11~20F	103	198,725,190	490,574,810	-	689,300,000	10,000,000	24,465,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241,255,000
		21~30F	73	199,215,300	491,784,700	-	691,000,000	10,000,000	24,55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41,850,000
		31~35F	23	201,175,740	496,624,260	-	697,800,000	10,000,000	24,89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244,230,000
	104동 1호	2F	1	181,484,850	448,015,150	-	629,500,000	10,000,000	21,475,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220,325,000
		3F	1	187,452,660	462,747,340	-	650,200,000	10,000,000	22,51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227,570,000
		4~5F	2	191,373,540	472,426,460	-	663,800,000	10,000,000	23,19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232,330,000
		6~10F	4	198,090,930	489,009,070	-	687,100,000	10,000,000	24,355,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68,710,000	240,485,000
		11~20F	5	198,725,190	490,574,810	-	689,300,000	10,000,000	24,465,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68,930,000	241,255,000
		21~28F	4	199,215,300	491,784,700	-	691,000,000	10,000,000	24,55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41,850,000
84B	101동 3호/ 102,103, 107,110, 112동 2호/ 109동 2,5호	1F	6	175,920,660	434,279,340	-	610,200,000	10,000,000	20,510,000	61,020,000	61,020,000	61,020,000	61,020,000	61,020,000	61,020,000	213,570,000
		2F	8	181,773,150	448,726,850	-	630,500,000	10,000,000	21,525,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220,675,000
		3F	8	187,740,960	463,459,040	-	651,200,000	10,000,000	22,56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227,920,000
		4~5F	15	191,690,670	473,209,330	-	664,900,000	10,000,000	23,245,000	66,490,000	66,490,000	66,490,000	66,490,000	66,490,000	66,490,000	232,715,000
		6~10F	40	194,487,180	480,112,820	-	674,600,000	10,000,000	23,73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236,110,000
		11~20F	78	195,121,440	481,678,560	-	676,800,000	10,000,000	23,84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236,880,000
		21~30F	68	195,611,550	482,888,450	-	678,500,000	10,000,000	23,925,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237,475,000
		31~36F	20	197,600,820	487,799,180	-	685,400,000	10,000,000	24,27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239,890,000
	104동 2호	1F	1	171,970,950	424,529,050	-	596,500,000	10,000,000	19,825,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208,775,000
		2F	1	177,823,440	438,976,560	-	616,800,000	10,000,000	20,840,000	61,680,000	61,680,000	61,680,000	61,680,000	61,680,000	61,680,000	215,880,000
		3F	1	183,791,250	453,708,750	-	637,500,000	10,000,000	21,875,000	63,750,000	63,750,000	63,750,000	63,750,000	63,750,000	63,750,000	223,125,000
		4~5F	2	187,740,960	463,459,040	-	651,200,000	10,000,000	22,56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65,120,000	227,920,000
		6~10F	4	194,487,180	480,112,820	-	674,600,000	10,000,000	23,73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67,460,000	236,110,000
11~20F		10	195,121,440	481,678,560	-	676,800,000	10,000,000	23,84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67,680,000	236,880,000	
21~29F	9	195,611,550	482,888,450	-	678,500,000	10,000,000	23,925,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237,475,000		

약식 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2026-05-26	2026-12-10	2027-06-10	2027-11-10	2028-05-10	2028-11-10	2029-05-10	
84C	104, 112동 5호	1F	1	179,063,130	442,036,870	-	621,100,000	10,000,000	21,055,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217,385,000
		2F	2	184,944,450	456,555,550	-	641,500,000	10,000,000	22,075,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224,525,000
		3F	2	190,941,090	471,358,910	-	662,300,000	10,000,000	23,115,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231,805,000
		4~5F	4	194,890,800	481,109,200	-	676,000,000	10,000,000	23,8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36,600,000
		6~10F	10	197,687,310	488,012,690	-	685,700,000	10,000,000	24,285,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239,995,000
		11~20F	14	198,350,400	489,649,600	-	688,000,000	10,000,000	24,4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240,800,000
101B	102,103, 110동 5호	1F	2	230,812,980	517,988,200	51,798,820	800,600,000	10,000,000	30,03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280,210,000
		2F	3	237,818,670	533,710,300	53,371,030	824,900,000	10,000,000	31,245,000	82,490,000	82,490,000	82,490,000	82,490,000	82,490,000	82,490,000	288,715,000
		3F	3	244,968,510	549,755,900	54,975,590	849,700,000	10,000,000	32,485,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297,395,000
		4~5F	6	249,667,800	560,302,000	56,030,200	866,000,000	10,000,000	33,3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303,100,000
		8F	1	253,012,080	567,807,200	56,780,720	877,600,000	10,000,000	33,88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307,160,000
		13~19F	2	253,790,490	569,554,100	56,955,410	880,300,000	10,000,000	34,015,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308,105,000
133P	112동 5호	26F	1	364,238,220	817,419,800	81,741,980	1,263,400,000	10,000,000	53,170,000	126,340,000	126,340,000	126,340,000	126,340,000	126,340,000	126,340,000	442,190,000
155P	103동 5호	27F	1	421,379,280	945,655,200	94,565,520	1,461,600,000	10,000,000	63,080,000	146,160,000	146,160,000	146,160,000	146,160,000	146,160,000	146,160,000	511,560,000

###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59.0000A		059.9847B	074.9802A	074.9891B	084.9869A	084.9808B	084.9896C	101.2177B	133.3409	155.2873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59A1	59A2	59B	74A	74B	84A	84B	84C	101B	133P	155P

- ※ 59A타입 청약 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59A1, 59A2타입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 지정되오니, 반드시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주택형별로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상기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사전에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 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유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m<sup>2</sup>, 세대)

구분		59A		59B	74A	74B	84A	84B	84C	101B	합계	
		59A1	59A2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1	-	-	6	5	1	-	17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	-	2	2	1	-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	1	-	3	3	1	-	10	
	장애인	부산광역시	6		1	-	1	6	6	-	-	20
		울산광역시	2		-	-	-	2	2	-	-	6
		경상남도	2		-	-	-	2	2	-	-	6
	중소기업 근로자	5		-	-	1	7	5	1	-	19	
	의상자, 의사자 유족	-		-	-	-	2	-	-	-	2	
	북한이탈주민	2		-	-	-	2	1	-	-	5	
	납북피해자	2		-	-	-	-	-	-	-	2	
	우수선수·기능인	-		-	-	-	2	-	-	-	2	
외향선원 근로자	2		-	-	-	4	1	-	-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9		3	1	2	38	27	4	2	106	
신혼부부 특별공급		69		6	1	5	88	63	8	-	24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1	-	1	11	8	1	-	31	
생애최초 특별공급		27		2	-	2	35	26	3	-	95	
합 계		163		15	3	12	210	151	20	2	57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 이며(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전용면적 85m<sup>2</sup>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용면적 85m<sup>2</sup>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 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특별공급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p><b>제3항 (출산특례)</b></p>	<p>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p>	<p><b>'24.6.19. 이후 출생한 자녀</b>(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b>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b>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b>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b>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b>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주첨제 청약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b>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li> <li>-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li> <li>- <b>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li>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p><b>공급기준</b></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b>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b></li> </ul>										
<p><b>무주택요건</b></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b>4-1</b>	<b>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b>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li>■ 의상자, 의사자유족 :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li> <li>■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li> <li>■ 남북피해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li> <li>■ 우수선수·기능인 :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li> <li>■ 외향선원 근로자 :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li> <li>■ ②배점</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b>2명</b>	<b>25</b>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403 2132 898">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순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1038 2132 1158">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기준</li>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li>-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입산·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7.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서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b>■ 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b>■</b>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b>■</b>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b>■</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b>■</b>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b>■</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b>■</b>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7.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b>청약통장 자격요건</b>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li>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b>청약통장 가입기간</b>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li>■ ①<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li> <li>■ ②<b>가점</b></li>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p>-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p> <p>-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u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u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li> </ol>

-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7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b>2026.04.06.(월)</b>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홈</li> <li>• (현장접수) 건본주택</li> <li>-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4-15</li> </ul>
일반공급	1순위	<b>2026.04.07.(화)</b> 09:00~17:30		
	2순위	<b>2026.04.08.(수)</b>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공고단지 청약연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b>당첨자발표 서비스</b>	<b>청약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4.14.(화) ~ 2026.04.23(목)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b>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4.1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8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6.04.14.(화)</li> <li>• 확인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li> <li>- 제출기간 : 2026.04.16.(목) ~ 2026.04.22.(수)</li> <li>- 접수방법 : 방문 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2순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장소 : 업무역 트라비스 하늘채 건분주택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4-15)</li> <li>- ※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 홈페이지(https://hanulche-eg.com/)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니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접수 건수 과밀로 인한 서류검토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상기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한하며,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또는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견본주택 청약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해당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특별공급 신청당일 견본주택 내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청약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	인감도장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관추천 대상자는 제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청약자'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li> <li>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li> <li>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li> <li>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li> </ul>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기관추천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li> <li>* 해당 기관의 추천자 확인은 사업주체(건본주택)에서 가능</li> </ul>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li> <li>*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li> <li>*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li> <li>*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li> </ul>
신혼부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li> <li>*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li> <li>*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li> <li>*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li> <li>*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부동산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li> <li>[※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 하는 경우</li> <li>*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li> <li>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li> <li>*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li> </ul>
생애최초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li> <li>*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헌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당첨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 •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제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견본주택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처: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분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 ② 축산업 허가증 /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전원) 발급, ※미성년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또는 세대원	•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li> <li>※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li> <li>•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li> </ul>	
			당첨사실 소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9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운영시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4.27.(월) ~ 2026.04.29.(수) [3일간]	10:00~17:00	업공역 트라비스 하늘채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사상구 과법동 544-15)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자격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중도금/잔금	국민은행	571501-01-379022	업공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코오롱글로벌(주)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오피스)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 101동 1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1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착오입금)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에 한함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당점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엄구역 트라비스 하늘채']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취득가액이 6억 이상인 세대에 한함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거래신고 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계약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등·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보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초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오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를 통해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이종당첨자, 부적격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 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조건을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시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약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사업주체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관할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 등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 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12-10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59A1	16,000,000	1,600,000	1,600,000	12,800,000	
59A2	16,000,000	1,600,000	1,600,000	12,800,000	
59B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74A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74B	17,500,000	1,750,000	1,750,000	14,000,000	
84A	21,000,000	2,100,000	2,100,000	16,800,000	
84B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84C	21,000,000	2,100,000	2,100,000	16,800,000	
101B	21,500,000	2,150,000	2,150,000	17,200,000	
133	31,000,000	3,100,000	3,100,000	24,800,000	
155	33,000,000	3,300,000	3,300,000	26,400,0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공사비	우리은행	1005-504-865903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11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1101홍길동'으로 기재)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나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가구(위치, 형태 및 개수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중 발코니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식당), 알파룸, 드레스룸 등)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 : 천원, VAT포함)

품목		제조사및 모델명	타입별 판매가											
			59A1	59A2	59B	74A	74B	84A	84B	84C	101A	101B	133	155
전기 쿱탑	선택1	인덕션 LG 3구/블랙	BEI3ASB4BI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선택2	인덕션 LG 3구/화이트	BEI3ANHLBI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선택3	하이브리드 삼성 인덕션2구+ 라디언트1구/블랙	NZ63T5601AK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선택4	인덕션 삼성 1구듀얼+플렉스존 /블랙	NZ63B5056AK	95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품목		제조사및 모델명	타입별 판매가													
			59A1	59A2	59B	74A	74B	84A	84B	84C	101A	101B	133	155		
전기 오븐	선택1	LG	MZ385EBTA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선택2	나비엔매직	EOB-3004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선택3	삼성	NQ36A6555CK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식기 세척기	선택1	LG 14인용 / 가구패널부착	DIE5PT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선택2	삼성 12인용 / 가구패널부착	DW80F71Y1SEW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시스템 에어컨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1)	LG, 삼성 중 택1	3,900	3,900	3,900	3,900	3,900	4,000	4,000	4,000	4,000	4,000	4,100	4,100	
	선택2	4개소 (거실 /침실1,2,3)		6,700	6,700	6,700	6,700	6,700	6,800	6,800	6,800	6,800	6,800	-	-	
	선택3	5개소 (거실 /침실1,2,3 /주방)		-	-	-	-	-	-	-	-	-	8,500	8,500	-	-
	선택4	6개소 (거실 /침실1,2,3 /주방 /알파룸)		-	-	-	-	-	-	-	-	-	9,600	9,600	-	-
	선택5	7개소 (거실 /주방 /침실1,2,3,4/가족실)		-	-	-	-	-	-	-	-	-	-	-	10,700	-
	선택6	7개소 (거실 /주방 /침실1,2,3,4,5)		-	-	-	-	-	-	-	-	-	-	-	-	10,700
빌트인 냉장고	선택1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3도어김치냉장고	LG	6,750	6,750	-	-	-	-	-	-	-	-	-	-	
	선택2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3도어김치냉장고 +시스템키큰장 *101A타입은측면장포함	BC4S1AA1(STS) +BC3K1AA1(STS)	-	-	7,100	7,100	7,100	7,100	7,100	7,100	7,800	7,100	7,100	7,100	
	선택3	삼성 (비스포크)1도어 키친핏 냉 장고 +1도어키친핏냉동고 +1도어키친핏김치냉장고+키큰장 *101A타입은측면장포함	삼성 RR40C7995AP/7895A+ RZ34C7965AP/7865A+ RQ34C7945AP/7845AP	-	-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7,100	6,500	6,500	6,500	
마감재 업그레 이드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벽 (마감재 종류 택1)		중급 엔지니어드스톤 (LX)	1,400	1,400	1,200	1,500	1,5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2,000	
			상급 엔지니어드스톤 (현대칸스톤)	3,600	3,600	3,200	4,200	3,800	4,600	4,600	4,600	4,800	4,800	4,800	5,600	
	엔지니어드 스톤 현관디딤, 욕실 젠다이 거실 아트월 타일 연장		상급 엔지니어드스톤 (현대칸스톤)	550	550	550	550	550	650	650	650	1,000	1,200	1,500	1,500	
			-	500	500	1,200	500	1,200	700	1,500	1,700	1,100	1,800	-	-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품목		제조사및 모델명	타입별 판매가											
			59A1	59A2	59B	74A	74B	84A	84B	84C	101A	101B	133	155
조명 특화	거실, 주방 우물천정 / 조명설치(직하:디밍/색온도+ 간접조명)/ 실링팬	-	3,200	3,200	3,400	3,500	3,500	4,300	3,500	3,400	4,500	4,300	4,800	4,800
욕실 스마트 환기팬	2개소(욕실1,2 각 1개소) *133타입,155타입은3개소	힘펠_FHD3-C150P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500	1,500
공기 청정 시스템	단계 필터 시스템+UV-LED모듈, 에어룸콘트롤러(1개소), 에어모니터(이동형)	경동나비엔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가구 옵션	침실1 불박이장	-	2,000	2,000	2,0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	2,500	2,800
	침실2 불박이장	-	1,200	1,200	1,200	1,200	1,100	1,500	1,500	-	1,500	-	-	-
	침실3 불박이장	-	-	-	-	-	-	-	-	1,500	-	1,500	1,020	1,500
	시스템가구(알파룸)	-	-	-	-	-	-	-	-	-	-	2,000	-	-

#### ■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및 납부일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우리은행	1005-504-865903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납부일정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11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1101홍길동'으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 등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하며, 기타 신청형 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함
-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브랜드별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임
-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 추가 선택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텐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타입별 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며 본 내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월패드에서는 제어가 불가함,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함
-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위치 확인 요망)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운영상 사유로 냉난방 공용 제품을 설치하였음
-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간 조건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천장 단열재가 반영되어 실내기의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음(관련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임
-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및 전용 콘센트 설비(안방)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의 냉매배관,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음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101A, 101B, 133, 155타입의 경우, 냉방부하 계산상 주방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을시, 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만으로 냉방부하가 부족할 수 있으며 냉방부하 부족에 따른 이의를 제시할 수 없음. 옵션 선택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사전에 부하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쿡탑(인덕션, 하이브리드쿡탑)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쿡탑 선택시 상판 타공 치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전기쿡탑 선택시 추후 가스쿡탑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타공이 있을 수 있음
- 전기쿡탑 제조사 및 제품 선택에 따라 디자인(색상)이 다르오니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시 식기세척기, 전기오븐과 동일한 크기의 수납가구가 제공됨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시 바닥, 벽에는 별도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 높이는 브랜드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 한 경우 가구도어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음
- 식기세척기 LG전자 제품을 선택 한 경우 가구도어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음
- 식기세척기 LG전자 제품은 대용량 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을 선택 한 경우 원활한 도어 개폐를 위해 가구 걸레받이와 식기세척기가 이격 설치되며, 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님

※ 추가선택품목 중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패키지, 오브제패키지)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59B/74A/74B/84A/84B/84C/101A/101B/133/155타입은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됨
- 59A1/59A2타입은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키큰장이 제공되며, 냉장고장 설치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됨(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59A1/ 59A2 타입은 비스포크패키지는 선택할 수 없음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됨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키큰장의 형태, 사양, 손잡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키큰장은 타입별, 브랜드별로 사이즈 및 구성이 다르오니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냉장고 선택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 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비스포크 패키지 유상옵션 선택 시 1도어 냉장고, 1도어 냉동고, 1도어 김치냉장고, 선반 키큰장으로 구성되며 가전, 가구의 배치순서 및 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오브제 패키지 유상옵션 선택 시 4도어 상냉장/하냉동, 3도어 김치냉장고, 시스템 키큰장으로 구성되며 가전,가구의 배치순서 및 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비스포크 패키지 선택시 새틴베이지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패널을 선택할 수 없음
- 빌트인 냉장고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메탈블랙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패널을 선택할 수 없음
-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시스템키큰장의 하부에는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로봇청소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해당 공간에는 직배수 연결가능한 공CD배관이 매립 설치 됨. 급배수관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청소기 업체를 통해 직접 설치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엔지니어드 스톤 관련 유의 사항

- 엔지니어드 옵션 주방상판과 벽체를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시공해주는 옵션임
- 엔지니어드 옵션1/옵션2 의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르오니 계약전 확인 하시기 바람
- 엔지니어드 스톤은 자재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 스톤은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추가선택품목 중 현관중문 관련 유의 사항

- 현관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됨
- 압력을 가하여 여닫기를 할 경우 도어패퍼기능으로 인하여 중문 프레임과 도어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음
- 본 공사시 비산방지필름이 유리에 부착됨
- 본 시공시 제품의 상하부 레일, 손잡이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옵션 미선택 시 현관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음. 준공 이후 현관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면 화재감지기 설치는 입주자분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현관 내 화재감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중 조명 업그레이드 및 거실 실링팬 공통 유의사항

- 추후 소비자가 직접 조명 교체 시 등보강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해당 옵션 선택시 주방 또는 식당의 우물천정이 형성되며, 우물천정 크기는 타입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거실 우물천장 부착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우물천장 부착형 조명은 우물천장 길이보다 짧게 설치됨
-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조명기구에는 전용의 컨트롤러(월패드,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되며,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조명기구의 경우 연동이 안될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실링팬은 조명 업그레이드 설치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 할 수 있음
- 거실 실링팬의 판매금액은 천장보강공사 비용이 포함될 금액임
- 거실 실링팬은 가동초반 진동소음이 들릴 수 있으며 여유공간 내에 높이가 있는 가구, 팬던트 조명, 가전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 바람이 약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실링팬의 날개 범위안에 조명이 있을 경우 바닥에 회전 그림자가 생길수 있으며, 천장형 시스템어컨의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실링팬 닿지 않도록 해야함
- 실링팬은 제공되는 리모콘을 사용하여야 하며 월패드에서는 제어가 불가함. 별도의 스위치 연결 및 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되며, 무상A/S 기간에도 A/S 처리가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중 욕실 스마트 환기팬 공통 유의사항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옵션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욕실환은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는 가감처리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
- 59A1,59A2,59B,74A,74B,84A,84B,84C,101A,101B타입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옵션 선택시 2개소(욕실1, 욕실2)에 설치되며 리모콘으로 제어할 수 있음
- 133,155타입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옵션 선택시 3개소(욕실1, 욕실2, 욕실3)에 설치되며 리모콘으로 제어할 수 있음
- 욕실 스마트환기팬 옵션 선택에 따라 욕실 천정, 점검구, 욕실 등의 설치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스마트 환기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욕실 스마트 환기팬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스마트 환기팬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위치 확인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청정환기시스템 공통 유의사항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는 가감처리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시 전열교환기 기본사양 제품품목은 바이패스&프리히터, 프리필터, 헤파필터(H13등급)가 제공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 기본제공 POP내용을 확인)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선택시 유상옵션사양 제품은 바이패스&프리히터, 4단계 필터시스템(프리필터, 전자집진필터, 탈취필터, 초미세 집진필터)+UV-LED모듈, 에어룸 컨트롤러(1개소), 이동형 에어모니터(1개소)가 제공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 유상옵션 POP내용을 확인)
- 청정환기시스템의 내/외부 공기 살균 시스템의 적용 방식은 UV LED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장비 설치 이전에 신규 개발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유상 옵션 적용을 통해 제공되는 전열교환기의 규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선택시 월패드에서는 On/Off 및 풍량제어 기능만 사용 가능하며, 전열교환기 메인 제어는 에어룸 컨트롤러에서 하며, 거실 혹은 주방 벽에 설치됨. (설치 위치는 타입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참고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 시행위탁자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방문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30년 02월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으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암반발견 등),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평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 주차장(아파트 2,505대, 근린생활시설 32대, 총 2,537대(장애인주차 84대 포함)), 자전거보관소(330대),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스카이라운지, 커뮤니티공간(키즈카페, 공유오피스, 독서실 등),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탁구연습장, 사우나 등), 어린이놀이터 외
- ※ 주차대수, 확장형 주차비율, 장애인주차 위치, 하역공간 등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구역별로 P1동 지하2층, P2동 지하 5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P1동 지하1층과 P2동 지하5층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 각 동별 연결되는 주차구역은 상이하므로 청약전 해당세대에서의 연결되는 주차구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레벨은 우수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도로보다 높으며, 차량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단지주출입구 2.7m 미만, 단지 부출입구 2.7m 미만이며, P1동 지하1층 및 P2동 지하5층의 차로의 유효높이는 2.7m, 주차구획 2.1m, P1동 지하2층 및 P2동 지하1~4층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주차구획 2.1m미만임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단위 : 원 ]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서 기간
제 01292026-101-0000800 호	사천이백구십오억오천일백육십오만만오천원정 (₩ 429,551,655,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13 단지 여건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 단지 내외부 여건

#### 1) 일반 공통

- 당 사업은 2021년 01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 2023년 09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1차, 2023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차, 2024년 10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3차, 2025년 0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4차, 2025년 09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5차를 득 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 홍보물 및 홍보에 사용된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과 VR, 홍보 영상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외벽 색채 및 디자인은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임
- 위치/ 내용 등은 인허가청의 협의, 시공시 현장 여건, 구조 안전 확보, 디자인 개선 등이 사유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중동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돌출물, 외부 마감재, 경관용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집광채광장치, 난간, 외부 로고 사인, 동호수 사인, 기타 부착 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시야 간섭, 소음, 빛반사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VR, 홍보영상,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 시야간섭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외벽 색채 및 디자인은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인허가 조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VR에 표현된 디자인(위치/형태/마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협의 및 시공시 현장 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은 인허가청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이후 아파트의 외관,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및 크기, 측벽 디자인, 태양광 발전패널, 집광채광장치, 외부색채, 난간색상 및 재질, 외부 로고사인의 형태/위치/내용, 기타 시설물 위치, 식재 및 포장계획, 옹벽 등은 인허가협의, 시공시 현장여건, 구조안전 확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로 마감되며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파트의 동출입구, 필로티 및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 마감재, 색채, 패턴 등은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르며, 이는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아파트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입면 디자인의 돌출 벽체 및 장식,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 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동일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 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측벽특화,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경관조명 등의 위치, 입면 디자인의 형태와 재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단지 내 시설물과 외부공간의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경관조명,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수목관리, 전기차충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집광채광장치,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종 환기구(D.A 등)의 면적 및 위치가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추가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는 59A1, 84A, 84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붕 및 옥탑에 위성안테나, TV 공칭 안테나, 이동 통신 중계기, 피뢰침, 저수조, 태양광발전설비, 집광채광장치,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음
- 기부채납 도로,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람
- 실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유리난간 창호를 적용하여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부부욕실 스피커폰, 스마트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세대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기구의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조도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 부대시설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 업무를 위한 A/S 센터(하늘채테라피)로 운영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104, 107, 109동 인근 및 102동 22층, 110동 33층에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102동, 110동 스카이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102동, 110동 일부세대(101B타입)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102,103동 인근 하부 및 10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기계/전기 관련 설비(실외기 등)가 공용공간 및 외부 공간에 설치 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역내 설치되는 어린이공원(엄궁A공원, 엄궁B공원)은 정비기반시설로서 분양단지의 부속시설이 아니며, 시설물의 위치, 식재 및 포장계획, 옹벽,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정비구역결정 사항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간이오니 계약 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들이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구릉지에 위치하여 단지내 외부공간에 높이 차이가 있으며, 각 동 및 호수 별 집입하는 높이가 다르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동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엄궁역(예정)에서 직접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연결통로는 엄궁역의 공사과정에서 삭제 또는 위치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엄궁역 연결통로 중 대지경계선 밖의 구역은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관련 민원을 시공사로 할 수 없음
- 엄궁역 연결통로와 연결되는 외부계단-5(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이용하는 시설로 공동주택 입주자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사용 등을 제한등을 할 수 없음

## 2) 세대 내부

- 세대욕실 일부분만 바닥난방이 설치되며, 욕조 하부 및 샤워부스 내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 우물천장과 커튼박스의 크기, 길이, 위치는 천정속 배관 등 본 시공사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가스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의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배수구의 위치, 설치 유무, 설치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부세대 오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에서 상부세대의 배관을 점검 및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다용도실 등 부위에 설치되는 각 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다용도실 등 부위에 선홍통, 배수관 등을 가리기 위해 천장, 벽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용도실에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보일러 연도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고, 보일러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보일러 유지관리시 공간 부족으로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동하여 보일러 점검 및 보수를 해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되며, 주방가구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되어 주방 상부장의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우수, 배수, 선홍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기와 환기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수전 위치 및 높이는 성능 향상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환기시켜야 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필터 교환이 필요하며, 필터 교체 시 필터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렌지후드 환기 덕트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현, 렌지후드, 전열교환기 등 환기 덕트는 발코니 천장, 실외기실 천장 등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주방가구 상부장에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주방가구 상부장의 수납공간이 줄어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에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작동을 위한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기본적으로 주방 상판에 가스레인지 연결을 위한 가스배관용 타공이 있으며,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에서도 가스배관용 타공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주방가구 하부장에 바닥난방을 위한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주방가구 하부장의 수납공간이 줄어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거실, 침실 등 타 공간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화장실 천장 내부에 상부세대의 급수, 급탕 분배기와 점검구가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에서 상부세대의 분배기를 점검 및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 등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일부 세대 발코니에 소방법에 따라 피난기구인 완강기, 완강기보관함, 완강기 발판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어컨설치를 위한 벽체매립 냉매배관 박스가 거실(스탠드형)과 안방(벽걸이형) 벽면 설치되며, 거실 아트월 벽면에 설치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세대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수 있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침실 불박이장, 선반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59A1,84A,84B)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59A2,59B,74A,74B,84A,84B,84C,101A,101B,133,155)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난간의 디자인, 난간의 높이, 손잡이 높이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프레임 및 유리, 난간)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잠금장치사양,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욕실2 및 욕실1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2 바닥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샤워부스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파우더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선반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파우더장,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커튼박스의 길이는 천정배관 등 본 시공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타일, 인조석, 천연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렵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천연석재, 천연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단위세대에 시공된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29타입을 제외한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과 분리되어 있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미설치되었고 하향식 피난 사다리로 대체되며, 화재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피난 대피를 위한 하향식피난구의 해당 점검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름(층별 교차 시공)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 일부 발코니(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인접실에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출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평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 가구는 현장 시공 오차에 따라 세대별 치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렌지후드 가동시 기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은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의 높은 단차부위(세탁기 설치부위), 욕조하부, 주방가구, 신발장, 샤워부스 및 도기하부는 제외되며,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계약자가 사용 중 또는 구매 희망하는 가구(식탁, 침대 등) 및 가전기기는 사이즈, 형태 등에 따라 배치 불가 또는 복도면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다용도실 천정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 다용도실 가스계량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이 있을수 있음
- 다용도실이 협소하여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이동이 필요하니 사전 확인 바람
-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천장고로 인하여 높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사전에 높이 확인 후 설치 필요함
- 다용도실이 협소한 세대는 수전은 세탁 및 손빨래 겸용으로 설치되며 손빨래 수전 사용시 사용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없음
- 주방후드 상부의 침니의 케이싱 사이즈는 성능 만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배수구나 우수, 배수 입상의 위치 등은 사용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수구 미사용시(배수구에 약취 방지를 위한 봉수 파괴시) 배수관 내부의 약취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에 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유지해야함
- 다용도실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높은 단차부위는 제외), 주방 및 거실등에서 출입하는 도어에는 단열성능이 없는 플라스틱도어 또는 동등사양의 도어로 시공예정임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사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최상층 승강기 기계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가전기기 사용 시 세대 전기 용량 및 차단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기본 제공되는 용량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 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하여야 함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내부 벽체 등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함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단지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임(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IoT 서비스(스마트 하울재 lok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입주자의 부담임(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음
- 가전제어 서비스의 경우 연동 가능한 제조사 및 가전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 도어락은 사용자 핸드폰 연동 디지털 도어락 제품이며, 일부 스마트 폰과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월패드, 부부욕실 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 각 동 1, 2, 최상층 세대에 방범을 위하여 세대 내 거실 창호 주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 층 및 그 외의 실에는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음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음
- 29형 제외 전타입 15층 이상 세대 거실에는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여야 함
- 집광채광루버는 본 공사 시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설치위치 등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3) 공용부/단지 내 환경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지상식 가스 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에는 각 세대의 주방, 욕실 등의 통기구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에 시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보호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식재 및 저층세대 차폐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임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해당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건물 외벽에는 각종 설비(환기, 냉난방, 가스, 정화조 등)를 위한 배관, 덕트, 환기캡, 보일러 연도 등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최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휨룸 및 주차장 휨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지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디자인, 마감재, 색채, 사인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색채 등은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이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외부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설치 위치,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입면패턴, 마감재, 창호, 난간, 사인 등의 형태 및 색채), 공용 부분의 계획(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문주, 경비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DA, 탑라이트 등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외관 차별화, 설계 합리성,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이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주동의 옥탑부 및 주동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문주 등 외부시설물의 장식 구조물 및 디자인을 위한 각종 조형물 등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PC조 포함), 철골조 등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방식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문주,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은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외부와 공용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이 사유로 인하여 수급이 불가할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및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동 공용부 및 근린생활시설 내,외부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리난간 창호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계양대는 설치되지 않으며, 국기계양대는 각 동 출입구에 1개소 씩 설치 예정으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문은 자동폐쇄장치가 시공됨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보행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및 환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인근 및 상부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치 상 일부 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착공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천창,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환풍, 실외기, 환기구(DA), 천창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지상1층 동 주변 및 필로티 내부에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내부 면적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일반 거치대형, 2단 거치대형, 레일 거치대형, 경사 거치대형 등으로 변경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보관대 형태를 요청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조경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공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옥외공간에서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1. 다양한 평면 타입이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상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개발,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법면 또는 사면,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환기구(D.A),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보행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공공보행동로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보행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P1, P2구역으로 구분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지하주차장 층수, 주차 배분,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 난간(웬스)는 설치되지 않으나, 일부구간에 한하여 안전 또는 단차로 인한 난간설치가 될 수 있으며, 시공 될 경우 위치 및 구간, 규격,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그에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옥외운동시설, 및 놀이터, 조경공간 등의 설치로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현황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된 조경공간, 인조수목(조화) 등은 놀이 및 운동공간이 아니므로 입주자의 주의를 요하며, 입주자 관리부재에 의한 하자, 식재 및 인조수목(조화)의 임의의 훼손은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이를 오염, 훼손하거나 또는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 실외 공용텃밭이 설치될 경우, 시공사는 텃밭시설만 조성하며 해당 텃밭은 입주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조성되는 면적과 수량이 한정되어 이는 시행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칭)주관으로 배분 및 운영
- 주거동 앞 또는 주변에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위한 인공지반 위 정원이 조성될 경우 이에 따라 소음발생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여건상 각 동마다 그 규모나 디자인이 다를 수 있으며 조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입주시 그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편은 민원요소가 아님
- 입주자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자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주자의 편의 및 자의에 의하여 단지내외 식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변경하였을 시, 이는 민원요소가 되지 않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각종 조경시설물의 경우 안내사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의 사용,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 시설의 임의적 개조 등 입주자의 사용상 개인부주의 및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 조경시설은 외부인의 접근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생태면적률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상업시설 주방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와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등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임의 개조, 물건적재 등이 불가능 하오니 계약 전 위치를 확인 바람
- 공공보행통로 (중로1-366호선~중로1-367호선 연결구간(단지 내) 폭3m이상,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있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 구조물, 마감재에 의해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임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계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여닫음에 어려움과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기계/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요 방법 및 방제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음. 특히 102동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발전기용 D.A와 인접하여 발전기 가동 시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은 작업 시기, 보수 등에 의해 구간별 일부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중간층 구간은 방수 적용 구간이 아니므로 강우, 강설 시 차량에 붙은 눈, 빗물로 인해 물이 유입될 시 하부층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어 유입된 물 제거 등에 관리주체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칭 안테나, 태양광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를 될 수 있음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고, 배치에 따라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함(세대수의 15% 이내 설치)은 각 동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나, 최종 위치는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주동 코어별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무인택배, 홈네트워크,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 부담임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아래와 같이 설치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기간사업자 공사분으로 시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층 : 103동, 104동, 108동, 112동
  - 각동 EPS/TPS, 지하층 헬룸
- 통신설비 관련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공시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13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아님
- 소방차의 진입, 회전, 정차 등을 위한 협의에 따라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조경 및 기타 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플랜터, 화분이 설치될수 있으며 플랜터내 경사녹지로 인하여 흙물이 떨어지거나 흙이 흘러내릴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인조수목(조화)가 설치될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단지내 플랜터 화분, 화단 등의 배수구의 주기적인 미 관리로 인한 막힘현상 또는 물넘침 현상은 입주민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단지내 수목, 시설물, 포장,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조경시설물은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며 입주민이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하자사항은 입주민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일부 동 옥상에는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동 옥상에 104, 105, 107동 세대 채광환경 개선을 위한 집광채광장치가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음)
- 동일 형태, 동일 세대조합, 동일 층수임에도 동별, 호별 승강기 대수가 차이가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승강기 대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102, 110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인접 부분에는 단지내 부대시설(스카이라운지)출입을 위한 별도의 스카이라운지 홀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스카이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102, 110동에 위치한 각 세대의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2동 22층, 110동 33층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스카이라운지)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 냄새발생, 하부층의 층간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3동 주변에 승,하차 공간과 맘스 스테이션이 조성되어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6, 108, 111, 113동 남동측에는 약 5~11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고 옹벽 외측(도로)으로 차도 및 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의 환경권 제한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4동 남동측에는 약 13.5~19M 높이(공동주택 약 7층 높이)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세대의 환경권 제한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 104, 105, 107동 인근(주출입구)과 102, 103, 110동 인근(부출입구)에는 차량 출입구 및 램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세대의 환경권 제한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 102, 103, 104동 인접 조경공간에 설치될 예정인 수경공간(생태연못, 물놀이터)의 수경설비 가동 등에 따른 소음발생과 인접한 일부세대의 환경권 제한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의 주요구조부(보, 기둥, 슬래브, 벽체 등)는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에서 구조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재료의 강도, 철근배근, 부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 및 복리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스카이라운지, 커뮤니티공간, 피트니스 시설(피트니스, 사우나, GX,

- 실내탁구연습장, 골프연습장), 어린이놀이터 외 지하주차장이며, 기타시설로 외부휴게공간,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중 실내는 피트니스 클럽, GX룸, 골프연습장, 탁구연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 예정이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실제 공사시 피트니스 클럽,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요구조부(보, 기둥, 슬래브, 벽체 등)는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조립틀을 시공하는 구조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재료의 강도, 철근배근, 부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평면 계획 및 창호 등의 위치 등은 입주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미터이며 주차구획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임
-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본 아파트 복리시설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의 4,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임

#### 5) 근린생활시설

- 상가별 전원공급, 소방 등 전기, 통신, 에어컨 배관, 소방 시스템 설비, 가스배관, 급수,배수배관 등이 건축 구조상 각 점포 상부 천장을 관통하여 설치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시 다른 매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점포 전기 용량 혹은 케이블 증설 시 타 점포의 내부에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입점자 간의 협의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시스템 에어컨공사 및 주방 환기는 입점자 공사분임
- 근린생활시설의 수도계량기는 입점자 공사분이며, 수도를 사용하기 전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에 수도를 사용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가스계량기는 입점자 공사분이며,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신청은 입점자께서 도시가스공급사에 신청해야하고, 관련 분담금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가스배관은 공용 복도 및 공용 공간이 없을 경우 매장 외부로 노출 설치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는 현황측량결과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감소)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디자인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근방(옥상 등 지정된 장소)에 입점자가 실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조도 확보를 위한 보안등 설치로 점포조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 또는 이동 요청이 불가함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음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 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입점 후 변경시도 동일)
- 상가 전기사용량 검침은 별도의 원격검침 시스템이 없으며, 공용판넬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전기계량기는 공용부에 집합으로 설치되며, 상가 관리자가 점포, 공용부 전기사용량을 확인 및 계산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함.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전기, 가스,

- 수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을 직접 부과받고자 할 시 입점자 부담으로 모자분리를 신청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신청 및 공사 모두 입점자분)
- 근린생활시설 전용 전기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전기 인입은 특고압 수전 방식으로 시공되고 준공 이후 특고압 수전설비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방문자 차량관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주차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점포별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은 200VA/m<sup>2</sup> 기준이며 그에 맞는 차단기 및 케이블 규격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 증설을 요청할 수 없음.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용량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는 불가함
-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하며, 전체 상가의 전기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상가 간판용 전원은 상가 간판 설치 부위에 전원선이 1개소 인출되며, 인출 위치를 변경 요청할 수 없음. 상가 간판용 전원을 미사용 시에는 인출되어있는 전원선은 해체 혹은 마감처리 요청할 수 없음
- 상가 간판은 인허가청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및 외관 디자인 계획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점포별 콘센트 2구 2개소, 통신 2구 2개소, TV 1구 1개소가 제공됨
- 전화,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시공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한 신청은 수분양자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계약을 해야함. (사용에 따른 비용은 입점자 부담)
- 상가 공용계량기함 위치는 건축계획에 별도 구획된 EPS실, 복도 또는 공용화장실에 노출 또는 매입 시공될 수 있음
- 냉난방용 에어컨 차단기는 설계도서 기준으로 차단기가 설치되며, 기설치된 차단기 용량보다 큰 용량의 에어컨 설치가 필요 할 경우에는 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엄구역 연결통로와 연결되는 외부계단-5(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이용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및 방문자의 사용 등을 제한등을 할 수 없음

#### 6) 단지 외부 여건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도로 및 시설, 공원 등은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관련 민원을 시공사로 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3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옥외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 문주, 자전거보관소(거치대)등의 위치, 재질, 형태 등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층고, 근린생활시설 층고,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인증 (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전체 대지면적을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계약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 후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학교배정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부산 엄궁초등학교 배치예정이며, 중학생은 기존 학교군에 분산배치 예정이나 학생 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교육청과 재협의를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초등학교, 중학교 :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과 : 051-3301-334~5, 홈페이지 주소: <https://home.pen.go.kr/bukbu>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예에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h3>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1. 공동주택명 : 업궁1 재개발 정비사업 2. 신 장 자 : 업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궁동 412번지 일원 4. 상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경양층격을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앙층격을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투음성능</td><td>★★</td></tr> <tr><td>4. 외벽소음차단도, 일조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파열성 급배수 소용</td><td>★</td></tr> </table>                       나. 구조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유지용이성 철구조물</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골조부분</td><td>★</td></tr> </table>                       다. 환경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폐도면 적화면 적감</td><td>★★★★</td></tr> <tr><td>3. 도공시 빛도, 진동 및 열악기(추방기름 환 양) 최소화</td><td>★★★★</td></tr> <tr><td>4. 일조권 간섭방해 대책의 타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갖기</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모순을 최소화한 건축물설계의 사용 용기</td><td>★</td></tr> <tr><td>10. 환경친화적 제품(EPEAT)의 사용</td><td>★★</td></tr> <tr><td>11. 적한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차단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재료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생활용가전제품의 친환경성 일치</td><td>★★★★</td></tr> <tr><td>16. 빛환경</td><td>-</td></tr> <tr><td>17. 빛을 잘 통출시켜주어 이용</td><td>★★★★</td></tr> </table>                       라. 생활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시 및 정보보장</td><td>★★</td></tr> <tr><td>2. 쾌적성</td><td>★</td></tr> <tr><td>3. 내구성</td><td>★</td></tr> <tr><td>4. 유지관리성</td><td>★</td></tr> <tr><td>5. 지도 및 제단 용이성</td><td>★</td></tr> <tr><td>6. 커넬성</td><td>★</td></tr> </table> </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07월 31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p> </div>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양층격을 차단성능	★★★	2. 중앙층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투음성능	★★	4. 외벽소음차단도, 일조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파열성 급배수 소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유지용이성 철구조물	★	4. 수리용이성 골조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폐도면 적화면 적감	★★★★	3. 도공시 빛도, 진동 및 열악기(추방기름 환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해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갖기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모순을 최소화한 건축물설계의 사용 용기	★	10. 환경친화적 제품(EPEAT)의 사용	★★	11. 적한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차단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의 적용 비율	-	15. 생활용가전제품의 친환경성 일치	★★★★	16. 빛환경	-	17. 빛을 잘 통출시켜주어 이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시 및 정보보장	★★	2. 쾌적성	★	3. 내구성	★	4. 유지관리성	★	5. 지도 및 제단 용이성	★	6. 커넬성	★	<div style="text-align: center;"> <h3>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p>인증번호 : G-SEED-P-2025-0716-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5.07.31.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p> <p>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7.01))</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tr><td>도지미용 및 교통</td><td>41%</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오염</td><td>58%</td></tr> <tr><td>재료 및 자재</td><td>47%</td></tr> <tr><td>물순환 관리</td><td>44%</td></tr> <tr><td>유지관리</td><td>80%</td></tr> <tr><td>생태경관</td><td>19%</td></tr> <tr><td>실내환경</td><td>50%</td></tr> </table> <p>종합등급 ★ ★ ★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07월 31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도지미용 및 교통	41%	에너지 및 환경오염	58%	재료 및 자재	47%	물순환 관리	44%	유지관리	80%	생태경관	19%	실내환경	50%	<div style="text-align: center;">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인증번호 : 25-주-에-14-0111 평가자 : 김진환 인증기관 :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인증일자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용기 종료일</p> <p>인증등급 : 1+등급</p> <p>위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p> <p>59.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에너지 효율등급</p> <p>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에너지 대소비량 건축설계</p> <p>22.0</p> </div> </div> <table border="1"> <caption>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결과</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연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연평균 에너지효율 (kWh/㎡·년)</th> <th>단위연평균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head> <tbody> <tr><td>냉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21.2</td><td>46.2</td><td>36.5</td><td>9.7</td></tr> <tr><td>급탕</td><td>30.7</td><td>35.5</td><td>26.4</td><td>7.2</td></tr> <tr><td>조명</td><td>7.5</td><td>7.2</td><td>19.7</td><td>3.4</td></tr> <tr><td>환기</td><td>-</td><td>3.6</td><td>9.9</td><td>1.7</td></tr> <tr><td>합계</td><td>59.4</td><td>92.5</td><td>92.5</td><td>22.0</td></tr> </tbody> </table> <p>■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연평균 에너지량          ■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드는 단위연평균 에너지량          ■ 단위연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차치,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평균 에너지량          ■ 단위연평균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된 [ V ]설비( )설치( )설비(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연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값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07월 31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녹색기후기술원</p> </div>	구분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평균 에너지효율 (kWh/㎡·년)	단위연평균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1.2	46.2	36.5	9.7	급탕	30.7	35.5	26.4	7.2	조명	7.5	7.2	19.7	3.4	환기	-	3.6	9.9	1.7	합계	59.4	92.5	92.5	22.0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양층격을 차단성능	★★★																																																																																																																										
2. 중앙층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투음성능	★★																																																																																																																										
4. 외벽소음차단도, 일조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파열성 급배수 소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유지용이성 철구조물	★																																																																																																																										
4. 수리용이성 골조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폐도면 적화면 적감	★★★★																																																																																																																										
3. 도공시 빛도, 진동 및 열악기(추방기름 환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해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갖기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모순을 최소화한 건축물설계의 사용 용기	★																																																																																																																										
10. 환경친화적 제품(EPEAT)의 사용	★★																																																																																																																										
11. 적한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차단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의 적용 비율	-																																																																																																																										
15. 생활용가전제품의 친환경성 일치	★★★★																																																																																																																										
16. 빛환경	-																																																																																																																										
17. 빛을 잘 통출시켜주어 이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시 및 정보보장	★★																																																																																																																										
2. 쾌적성	★																																																																																																																										
3. 내구성	★																																																																																																																										
4. 유지관리성	★																																																																																																																										
5. 지도 및 제단 용이성	★																																																																																																																										
6. 커넬성	★																																																																																																																										
도지미용 및 교통	41%																																																																																																																										
에너지 및 환경오염	58%																																																																																																																										
재료 및 자재	47%																																																																																																																										
물순환 관리	44%																																																																																																																										
유지관리	80%																																																																																																																										
생태경관	19%																																																																																																																										
실내환경	50%																																																																																																																										
구분	단위연평균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평균 에너지효율 (kWh/㎡·년)	단위연평균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1.2	46.2	36.5	9.7																																																																																																																							
급탕	30.7	35.5	26.4	7.2																																																																																																																							
조명	7.5	7.2	19.7	3.4																																																																																																																							
환기	-	3.6	9.9	1.7																																																																																																																							
합계	59.4	92.5	92.5	22.0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응답가속도	메르칼리 진도 등급
I	0.20736	VII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 사 명	(주)삼우씨엠건축사무소	(주)세광티이씨	대원포비스(주)
감리금액	7,593,143,800	1,202,592,840	1,606,836,000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자)	시공사
상 호	엄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코오롱글로벌(주)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776번길 35(엄궁동)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코오롱)
법인등록번호	184471-0003337	110111-0036502

■ 분양관련 문의 / 견본주택 안내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안내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4-15</li> <li>■ 운영기간 : 2026. 04. 03. (금) ~ 분양 종료 시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운영시간 : 10:00 ~ 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b>홈페이지 (PC, 모바일)</b>	<b>분양문의</b>
■ 공식홈페이지 : <a href="https://hanulche-eg.com">https://hanulche-eg.com</a>	■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 ☎ 1670 - 0520 (10:00 ~ 1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